

## 27. UR協商結果 및 對策方向

資料提供：建設部

### 1. 건설시장개방계획

UR서비스 협상 및 정부조달확장협상이 지난 '93. 12. 15 최종타결됨에 따라 건설관련 시장개방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됨

#### 가. 민간건설시장(UR서비스 협상결과)

##### ○ 건설업

구 분	일반건설업	전문건설업
100% 단독투자 허용(면허)	'94 하반기	'96. 1
지사설립 허용(면허)	'96. 1	'98. 1

※ 일반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100% 단독투자법인 설립은 '94. 1월부터 허용되나, 건설업법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개정이 완료되는 '94년 하반기에 면허가 발급되므로 '95년부터 실질적인 참여 예상

##### ○ 건축설계서비스

- '96. 1월부터 국내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 참여 허용

##### ○ 건설기계장비임대서비스

- '96. 1월부터 허용

※ '94. 4월 모로코 각료회의에서 협정서명후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'95. 7월경에 발효 될 전망

#### 나. 공공건설시장(정부조달확장협상 결과)

##### ○ 건설공사

구 분	개방대상공사	비 고
중 앙 정 부 기 관	500만SDR이상 (약53억원)	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, 안기부, 비상계획위 를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
지 방 정 부 기 관	1,500만SDR이상 (약 160억원)	서울특별시, 5개직할시 및 9개도
정 부 투 자 기 관	1,500만SDR이상 (약 160억원)	23개 정부투자기관

○ 건축설계서비스 및 건설기계장비 임대서비스

구 分	개 방 대 상 서 비 스
중 앙 정 부 기 관	13만 SDR(약 1.5억원)이상
지 방 정 부 기 관	20만 SDR(약 2.2억원)이상
정 부 투 자 기 관	-

- ※ 1.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외국업체도 국내건설업법의 면허, 도급한도액제 등 UR양허상의 국내관련규제제도의 적용을 받게됨
- 2. 발효시기는 '97. 1월(기가입국은 '96. 1월)

## 2. UR및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

### 가. UR서비스 협정(공개주의, 내국민대우, 분쟁해결등 전문 29조)

○ 공개주의

-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주는 제도(법률, 규정, 행정조치등)를 UR발효전까지 공표하고 협정발표후 2년이내에 문의처 설치
-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수정의 경우 즉각적으로 서비스 이사회에 통보

○ 점진적 자유화

- 협정발표후 5년내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 협상

○ 국내규제

- 외국업체들이 국내업체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규정

이나 조치를 공평하게 적용하고, 차별대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마련

○ 분쟁해결

- 다른 회원국의 이의제기에 관한 협의에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분쟁해결은 “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”에 따라 서비스이사회나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름

나. 정부조달협정(가격산정, 입찰절차, 계약·낙찰의 투명성등 전문24조)

○ 적용범위 및 내국민대우

-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기타 양허한 기관의 조달에 관한 법령, 규칙절차 및 관행에 적용되며,
- 이의 적용에 있어 다른 국가의 공급자에게 자국의 공급자와 같은 대우를 제공

○ 개방대상공사의 의도적인 소규모 분할발주의 금지

- 합의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개방대상공사를 소규모로 나누어 발주하여서는 안됨

○ 입찰절차

- 입찰종류: 공개경쟁, 지명경쟁, 제한경쟁
- 예정된 조달공사에 대한 입찰초청은 지정된 출판물에 세계무역기구(WTO)공용어로 공고하여야 하며, 입찰서류는 여러언어로 작성을 허용하되 WTO공용어(영어, 불어등)가 포함되어야 함
- 낙찰은 최저가입찰 또는 입찰시 사전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고, 모든 입찰참가자에 낙찰결정내용을 통보
- 발주처는 계약체결후 낙찰 및 계약내용을 지정된 발간물에 공고
- 협정가입국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조달관행과 자격심사 탈락사유등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

○ 협정가입국의 의무

- 정부조달관련 법령, 규제, 절차를 가입국이 확인가능한 간행물에 공표
- 입찰에 실패한 업체는 낙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실패사유를 알려주어야 함
- 조달관련통계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

○ 이의신청절차

- 공급자가 본 협정 위배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평하고 신속히 검토, 조치
- 이의제기절차 마련
-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법원 또는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

다. 건설시장개방 대책수립에의 시사점

- 국내건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우대조치는 외구업체에 대한 차별로서 지원제도의 신설 또는 유지가 어려움
- 건설시장개방이후 외국업체가 실제 우리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각종 제도상, 정책상의 진입제한요소들이 앞으로의 주기적인 협상에서 쟁점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내건설시장에서의 외국업체와의 전면경쟁이 불가피
- 국내건설산업에 대한 특정한 지원 또는 외국업체에 대한 국내영업 제한방안등 소극적인 시장보호대책보다는 우리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최선의 대책임

### 3. 건설시장개방 대책방향

가. 기본방향

- 건설시장개방을 국내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의 계기로 적극활용하기 위하여 국내건설관련제도를 국제화
-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국제수준화함으로써 외국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
- UR타결에 따라 확대개방될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건설시장의 잠식을 보완하고 선진건설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을 습득하여 건설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
- 지난 '93. 12월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(위원장 : 건설부 제1차관보)를 활용, 매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종합분석한후 구체적인 건설시장개방대책을 마련,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적극반영해 나갈 계획

## 나. 국내대책

### 1)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

- 원하청 협력관계의 강화
  - 부대입찰제의 도입등으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정한 하도급질서와 원하청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응기반 구축
-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(PQ)의 활성화
  -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심사하여 선정함으로써 시공여건 등 당해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밝은 국내업체들이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발판 마련
-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 제고와 기술개발을 유도
- 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 배양
  - 종합건설업면허제 또는 등록제의 도입보다는 사업수행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양되도록 턴키입찰제를 확대시행하고 건설업체의 설계감리분야 참여확대를 유도
- 건설기술수준의 제고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
  - 주요 핵심 건설기술의 민·관·학·산 합동연구개발체계 구축
  - 민간의 응용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유인제도 보완
  - 건설자재의 규격화, 품질향상등 건설자재산업 육성책 강구
-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
  -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(현행 3~5년→최장 10년)하여 책임시공 토 조성
  - 부실시공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괄하도급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
  - 내역입찰제의 확대실시
  - 건설공사의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고 감독업무는 감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감리제 추진

### 2) 건설관련제도의 국제화 추진

- 예산회계규정을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정

- 발주기관의 국제계약 관리능력 제고
  - 외국업체의 진출에 대비하여 UR관련규정 및 국제계약제도를 숙지시키고 클레임제기시 대처능력, 법적분쟁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
  - 공사품질, 자재규격, 시공기준등을 선진국의 시방서를 참조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보완
- 건설업분쟁조정등 관련기구 보강
  -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외국업체의 클레임제기시 조정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강
  - 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업체가 동 협정에 저촉되는 국내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기관과 외국의 조회문의에 회답할 조회기관 설치
- 외국업체에 건설업면허 부여를 위한 건설업제도 정비
  - 외국인기술자의 인정기준 마련
  - 도급한도액 산정시 외국공사실적 인정

#### 다.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

##### 1) 해외건설지원제도의 획기적 확충

- 신경제 국제화전략부문 세부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'93. 11. 8 대통령께 보고후 시행중
  -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자지원을 확충하고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면의 경쟁력을 제고
  - 새로운 해외건설진출방식인 부동산개발등 자체개발형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
  - 해외근로자에 대한 주택분양제도를 개선
- 해외건설진출에 관련된 조세, 금융, 보험등 모든 가능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금융경쟁력 강화대책 추진
  -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요건 및 한도 완화 추진

##### 2) 해외건설관련 정부규제완화

-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해외건설관련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민간업

체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진출기반 조성한 바 있음('94. 1. 1부터 시행중)

-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능력과 의욕있는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참여를 허용
-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진출 허용
- 해외공사도급허가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해외공사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
- 해외건설촉진법령뿐 아니라 해외건설진출에 따른 관련법령의 각종규제를 대폭 해소 추진
  - 해외건설용역인증절차 간소화로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발급지연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
  -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외환규제 완화추진

### 3) 적극적인 건설협상을 통한 선진국 시장진출 장애요인 해소

- UR협상타결에 따라 국내시장잠식 가능성성이 크고 건설시장규모가 큰 미국, 일본, EC등 선진국시장에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이들 국가의 시장장벽을 정밀분석, 이의 시정을 상대국에 요구할 계획

### 4) 건설외교를 강화하여 주요유망시장에 대한 진출기반 심화

- 중국, 베트남, 러시아등 사회주의 국가 및 인도네시아,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건설협력 양해각서 체결, 건설장관회담 개최 등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건설 외교 전개

## 라. 건설업체에 대한 요망사항

- 정부의 건설관련 제도개선 및 경쟁력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한 자구노력이 요청됨
- 건설업체간 원하청 협력관계의 구축
  -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 하도급계열화를 형성하지 않도록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간의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에 업계 스스로 노력
- 건설기술개발노력 강화
  - 업계 자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신기술 개발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선진기술을 앞세운 선진국업체와의 경쟁에 대비, 건설산업의 자생력제고
- 국내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건설행정제도가 조속히 완화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업계가 개선요망사항을 적극 발굴, 정부의 규제완화노력에 협조 요망